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4
----------	------

제출연월일 : 2005. 10.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2005. 4. 1일 조례제정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안) 변경 지침이 여러 차례 시달되었고, 경실련 등 사회단체로부터 사회적 관심사안으로 부상한 당해 조례에 대해 자체 의견서 등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코자 함.

2. 주 요 내 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함(제3조 2항)
- 위원 위촉 및 임명시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제3조 5항)
- 각 협의체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조항 신설(제9조 1항)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조항 신설(제15조)

3. 근거(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2건)

4. 의 안 전 문 : 불 입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 첨 부 1) 근거법령(지방자치법)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부시장 및 보건소장”을 “시장 및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중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에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을 삽입한다.

제9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동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생략)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u>부시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 1.- 5.(생략) ③ (생략) ④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u>부시장은</u>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된다. <u><신 설></u></p> <p>제4조(실무협의체) ① (생략) ② (생략)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u>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u> ④ (생략)</p> <p>제8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u>당해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u></p> <p>제9조(회의 등) <u><신 설></u>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u><신 설></u></p> <p>제15조(시행규칙) (생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장 및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u>..... 1.- 5.(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u>시장</u>..... ⑤ <u>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제4조(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당연직 위원이 된다.</u>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u></p> <p>제9조(회의 등) ① <u>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u>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7호)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변경알림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5('05. 1.25)호로 통보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중 일부내용이 보완된 변경안이 시달되어 보내드리니 조례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변경(안) 내용 1부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비교표 1부 끝.

충청북도



수신자 더01-12(사회복지관련부서장)

★지방행정주사 강전권 지방행정사무관 전결 05/03
조재학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5983 (2005.05.03.) 접수 복지사업과-9012 (2005.05.03.)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변경알림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평가팀-5('05. 1.25)호로 통보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중 일부내용이 보완된 변경안이 시달되어 보내드리니 조례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변경(안) 내용 1부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비교표 1부 끝.



수신자 더01-12(사회복지관련부서장)

★지방행정주사 **강전권** 지방행정사무관 **전길 05/03**
조재학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5983 (2005.05.03.) 접수 복지사업과-9012 (2005.05.03.)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

붙임2)

00 사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비교표

당초(안)	변경(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00사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사 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p>② 대표협의체는 00 시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00사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사 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p>② 대표협의체는 00 시군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p>

<p>원장을 포함하여 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p> <p>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00과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과장), 00과장(보건소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p> <p>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p> <p>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원장을 포함하여 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p> <p>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00팀(시군구 사회복지담당팀(계)장), 00팀(보건소 담당팀(계)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p> <p>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p> <p>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p>
--	---

<p>②가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가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가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가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해촉) 사 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사 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가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군구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p>	<p>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가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p>
<p>②가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③가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가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p> <p>③가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8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9조(회의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가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p>	<p>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가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p>

<p>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회의록) ①가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회의록) ①가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사 군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사 군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p>	<p>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p>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00시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00시군구 000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제 7조에 의한 00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지침) 추가변경 통보

1. 사회복지과-6452(2005. 5.12)호와 관련 입니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호 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3. 이에 따라 위원회와의 명확한 역할관계 정립을 위한 운영의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불임과 같이 협의체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



수신자 더01-12(사회복지관련부서장)

★지방행정주사 **강전권** 지방행정사무관 **조재학** 사회복지과장 **06/02 김태관**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7273 (2005.06.02.) 접수 복지사업과-11153 (2005.06.02.)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지침)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비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안내 (지침) p14	대표협의체 구성대상(표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시군구 부자치단체장	대표협의체 구성대상(표2)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시군구 자치단체장	사회복지분야 각종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 장임에 따라 지 역사회복지협의 체의 역할관 계와 위원장간 의 관계가 부적 절하게 설정됨
안내 (지침) p37 (붙임1)	운영조례(안) 제3조(구성)② 대표협의체의 위 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 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 하되, 부시장(부군수·부구청 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 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운영조례(안) 제3조(구성)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군수· 구청장)·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 다	